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
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3. 7. 8.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'93. 6. 11.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: '93. 6. 28.
- 다. 상정일자: 제17회입사회 제2차위원회('93. 7. 8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총무과장 김석봉)

가. 제안이유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의 정원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시의회와 균형을 유지하고 사기를 진작코자함.

나. 주요골자

- 기능직 :
 - [8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...2명감
 - [10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...2명감
- 별정직
 - [지방별정직 : 7급상당(속기사)...1명증
 - [지방별정직 : 8급상당(속기사)...2명증
 - [지방별정직 : 9급상당(속기사)...1명증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건재)

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에 근거한 개정으로, 자치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는 기능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,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시의회와 균형을 유지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하려는 것임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
- 5. 토론요지: 없음
- 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8. 기타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
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09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: 1993. 6. 11.
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자치구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의 정원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시의회와 균형을 유지하고 사기를 진작코자함.

2. 개정주요골자

- 기능직
 - 8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...2명감
 - 10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...2명감
- 별정직
 - 지방별정직7급상당(속기사)...1명증
 - 지방별정직8급상당(속기사)...2명증
 - 지방별정직9급상당(속기사)...1명증

3. 개정근거

지방자치법 제83조 1항

4. 개정조례(안): 별첨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
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별표>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원정원표중 기능직8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2명, 기능직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2명을 삭제하고 지방별정직속기사(7급상당)1명, 지방별정직속기사(8급상당)2명, 지방별정직속기사(9급상당)1명을 신설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기능직의 별정직 전환에 따른 경과 조치)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